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410
------	------

2025.03.04.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02월 03일, 홍국표 의원(찬성자 33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02월 0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3.0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홍국표 의원)

### 1. 제안이유

- 도시형소공인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고령화 등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해 시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보호·육성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또한,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한 비상설로 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보다 현실 적합한 지원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과 도시형소 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노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과 재원 확보 노력에 관한 책무 규정,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및 도시형소공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됨.

#### 2. 주요 개정사항

##### 가.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2조의2)

- 안 제2조의2는 시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과 도시형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노력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sup>1)</sup>은 지방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형 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안 제2조의2는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형소공인 관련 단체로부터의 의견 청취 신설(안 제3조제3항)

- 안 제3조제3항은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역과 업종 부문에서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규정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u>&lt;신설&gt;</u>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 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정책 및 계획의 자문을 위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성격, 위원의 구성 등을 명시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하였으며, 동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낭설을 방지하고 조례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 다만 도시형소공인<sup>2)</sup>은 소상공인의 일부이므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sup>3)</sup>와 그 기능면에 있어 중복의 우려도 있으나, 현재 서울시는 도시형소공인과 소상공인 관련 조례 및 담당 부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더욱이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도시형소공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2) '도시형소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함.

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6조의2(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 설>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

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도시형소공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1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 석,  
박성연, 박영한, 서상열,  
서호연, 신복자, 유만희,  
유정희, 이민석,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성배,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33명)

## 1. 제안이유

- 도시형소공인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고령화 등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해 시장에게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보호 육성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또한,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한 비상설로 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보다 현실 적합한 지원 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시행과 도시형소공인 보호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노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 나.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서울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도시형소공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조의2(책무)	①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u>&lt;신 설&gt;</u>	제4조의2(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 설>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도시형소공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도시형소공인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주요 정책 자문 등 안전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서울특별시 서울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서울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2(도시형소공인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제4조의2(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나. 전제

-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2명을 공무원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9,000천원(연평균 3,8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4조의2(위원회)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소계(a)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서울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2(도시형소공인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9,000천원(연평균 3,8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4조의2(위원회)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소계(a)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 = 19,000천원
  -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 16,000천원+3,000천원

- 참석수당 = 16,000천원
  -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 200천원×8명×2회×5년

※ 지급인원 : 위원 10명 중 공무원(당연직) 2명은 제외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업무추진경비 = 3,000천원
  -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 30천원×10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